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146호
----------	------

제출일자 : 2017. 11.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금 산출 기초

구 분	산 출 식	산출금액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137,477,122천원*0.015%	20,622천원

- 붙임 1. 출연심의 요구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출연기관 현황 1부. 끝.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30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 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622천원(군비 20,62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관 운영비		1년	11,214	13,198					
	주요 사업비		1년	6,308	7,424					
	연구사업		1년	3,329	3,918					
자치단체지원		1년	2,979	3,506						
* 2018년 요구액은 최종 실적검토 결과액으로 기재										
출 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사업부서 의 건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사업부서부서 검토의견서

1. 2016년도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 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음. 연구결과물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재정확충을 위한 수탁과제 확보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수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기금적립 주요목적인 청사매입을 달성하여 출연비율의 합리적 개선 추진이 필요함.

□ 운영실적 평가

- 정책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지방세 연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비롯하여 지방세제 개편이나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지원 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전문교육 콘텐츠를 제공, 지방세법령제공시스템(OLTA)을 통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사례, 유권해석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 서비스의 복합적 역량을 강화하였음
- 단계적으로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도별 경영목표와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적인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권고하며,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지자체 협력분야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당연직감사, 선임감사, 연구원장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시행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최종) (C)	2018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총 계	15,512	17,522	20,622	20,622	-	3,100
연구사업	3,103	3,329	3,918	3,918	-	589
자치단체지원사업	1,706	2,979	3,506	3,506	-	527
기관운영 (인건비, 경상비 등)	10,703	11,214	13,198	13,198	-	1,984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151조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17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1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0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1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이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공석			공석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7.02.28~2018.02.27	
	원장	공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공석	
	이사	최○○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사	신○○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사	우○○	○○도 자치행정국장		2017.02.28~2018.02.27	
	이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7.02.28~2018.02.27	
	이사	이○○	○○도 ○○시 부시장		2017.02.28~2018.02.27	
	이사	신○○	○○도 ○○군 부군수		2017.02.28~2018.02.27	
	이사	이○○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7.02.28~2018.02.27	
	이사	손○○	○○대학교 교수		2017.02.28~2019.02.27	
	감사	김○○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설립이후 2016년까지 지 자체가 출자·출연한 금 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예산액 ²⁾	7,518	8,406	9,986		8,723 (자산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7,198	8,276	9,551		99 (부채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자본 ¹⁾
	8,933			6,912		8,623 (자본금 총액)
						당기순이익
						2,020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